

첨부서류	1. 의사 처방전(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) 1부 2. 세금계산서 1부 3. 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(수진자 본인만 해당)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※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작성방법

- ① :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 -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.
- ② :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영양기관명, 영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.
- ③ :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.
- ④ : 소모성 재료 청구 일수를 적습니다.
- ⑤ : 구입한 소모성 재료의 종류에 "✓" 표시하고, 영수증상의 구입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을 적습니다.
- ⑥ :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"✓" 표시 합니다.
 - 금융기관명, 예금계좌번호, 예금주, 예금주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(의료기기 판매업소일 경우)를 정확히 적습니다.
 - *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 -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: 진료받은 사람,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 -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: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료기기판매업소(당뇨병 소모성 재료)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
 -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등수급계좌(압류방지 계좌): 요양비등수급계좌(압류방지 계좌)로 신청 시 진료받은 사람 본인만 해당
 - *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.
 - 〈예시: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, 당좌예금, 기업자유예금, 가계당좌예금〉
- ⑦ : 청구인은 진료받은 사람, 진료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, 진료받은 사람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하거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하되, 청구인(진료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)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